[별지 제4호 서식] 평가결과서

정 책 연 구 과 제 명		이·미용 관련 학교 학과 교과목 이수규정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 원/김은정	
부서/과제 담당관		구강생활건강과/이석규	담당공무원	김은현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3.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09.4.10. ~ 2	2009.4.10. ~ 2009. 10. 9.(6개월)		
연 구	결 과	• 국내외 관련현황분석 및 관련전문가·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한 이·미용 교과 이수기준(안) 마련			
•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적정함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대체로 적정하나, 연구위원회 경영분야, 법제도분야의 전문 있었다고 판단됨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적정함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대 • 기타사항 - ※ 별지를 참고해 주세요.				께 참여할 필요가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제담당관	
	성 명	이 호 용	c	이 석 규	

※ 별지

- 1. 기능교육 위주의 교과 편성의 문제점
 - 지금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이·미용업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습위주의 기술교육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이·미용에 종사하는 인력이 고급화,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용 기술이우수하다고 해서 이·미용 인력이 고급화, 선진화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단지 기술만 우수하다면 자본가에게 예속되어 고용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 지언정, 이·미용인 자체가 주체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미용 업계를 발전시키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미용이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고 산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미용인 스스로 이·미용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활능력있는 이·미용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즉, 전문인력으로서 이·미용인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경영능력, 과학적 인식능력, 문화적 교양, 법제도에 대한 인식능력 등을 함께 갖출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로 연구진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의 이·미용 교육과정을 살펴보라. 보고서 94면에서는 일본의 미용사 교과과목 및 표준수업시간 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수 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관계법규·제도, 위생관리, 미용보건, 미용물리·화학, 미용문화론, 미용기술이론, 미용운영관리 등 다양한 기초 이론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전체 2000시간 중에 600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기술교육은 교과과정외 과외활동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보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기술학원에서의 교육과 동일시 되어서는 아니된다.
- 이러한 점에서 학교나 대학에서 주로 기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 점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들을 위주로 하더라도 위생학전문 가, 경영학전문가, 법제도전문가 등이 함께 참가하였어야 한다.
- 2. 공중위생관리학, 공중보건학과 위생법규
- 면허제도의 목적은 연구진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위생적인 생활 영 위와 건강보호에 있다. 또 본 연구의 교과과정은 일정한 면허를 부여하기에 가장 적정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 제도의 목적이 무엇 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기능에 치중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예술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라

면 그러한 관점에서 교과 편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점에서 기초학문으로서 공중위생학이나 위생법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한다. 2년의 짧은 교육기간속에서 이러한 기초과목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 가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적 숙련은 수업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과후 활동이나 과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기술이 습득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술교육 위주로만 교과를 편성하는 것은 그리 적정하지 아니하다.
- 한편, 위생관리 혹은 공중보건학과 위생법규는 중요한 관련성은 있지만 학문적 토대가 전혀 다르다. 공중보건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위생법규를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이론적 의미를 알고 가르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것을 같은 내용 의 학문영역으로 분류하고, 유사과목 혹은 대체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문 적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공중보건 혹은 위생관리는 영업자 스스 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위생적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문영역이고 위 생법규는 행정이 어떻게 위생적 분야의 통제 혹은 지원을 하게 되는지를 살 펴보는 학문영역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 짧은 수업연한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양보하여 위생법규를 공중위생관리학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학에서 위생관리와 위생법규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애될 것인지 명백히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